

# 남 해 군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선 람	기 관 의 장



제 674호 2020. 10. 6.(화)

## 고 시

남해군 고시 제2020-167호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(지적도근점) 고시 ..... 1  
 남해군 고시 제2020-17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..... 3

## 공 고

남해군 공고 제2020-1175호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  
 남해군 공고 제2020-1176호 남해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9  
 남해군 공고 제2020-1185호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... 15  
 남해군 공고 제2020-1187호 남해군계획시설[교통시설:도로,공간시설:녹지(에코촌 조성사업)] 사업  
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(의제)에 관한 공람·공고 ..... 21  
 남해군 공고 제2020-1188호 남해학숙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.. 28  
 남해군 공고 제2020-1189호 공인 등록 공고 ..... 33

회 략									
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남해군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편집 : 기획예산담당관(860-3045, 행정 3045)

고 시

남해군 고시 제2020-167호

**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(지적도근점) 고시**

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(지적도근점)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9월 22일

남 해 군 수

- 측량성과 고시현황
  - 측량기준점(지적도근점) : 5점
  - 측량성과고시 내용 : 붙임 참조

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(지적기준점) 고시내역

[남해군]

기준점 명칭	번호	원점	지역측지계	세계측지계	표고	경도	위도	설치일	소재지	표지제질	측량성과 보관장소	비고
도근점	10102	중부	148897.93 283920.12	249206.566 283994.801	4.046	34-50-7.0428	127-55-5.7218	2020.09.10.	남해읍 임현리 397-1	기타	남해군청	신 규
도근점	10103	중부	148911.71 283823.59	249220.342 283898.277	3.994	34-50-7.5185	127-55-1.9283	2020.09.10.	남해읍 임현리 397-1	기타	남해군청	신 규
도근점	10104	중부	149046.23 283839.58	249354.857 283914.260	4.690	34-50-11.8783	127-55-2.6057	2020.09.10.	남해읍 임현리 406-22	기타	남해군청	신 규
도근점	10105	중부	149129.89 283817.61	249438.521 283892.289	4.323	34-50-14.5994	127-55-1.7712	2020.09.10.	남해읍 임현리 406-22	기타	남해군청	신 규
도근점	10106	중부	149326.84 283748.77	249635.476 283823.443	4.299	34-50-21.0103	127-54-59.1327	2020.09.10.	남해읍 임현리 406-22	기타	남해군청	신 규

남해군 고시 제2020 - 171호

## 하천점용허가 고시

「하천법」 제33조 제6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9월 28일

남 해 군 수

1. 하 천 명 : 오룡천(지방하천)
2. 성 명 : 진지리00 사내이사 김종0
3. 주 소 :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2로
4. 점용목적 : 태양광발전시설의 공사차량 진·출입로
5. 점용위치 :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오용리 1343번지
6. 점용면적 : 7,710m<sup>2</sup>
7. 점용기간 : 2020. 4. 1. ~ 2023. 3. 30. (3년)

공 고

남해군 공고 제2020-1175호

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9월 21일

남 해 군 수

1. 자치법규명

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

2. 개정이유

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보상대상자(재해부상군경·공무원 및 그 유족 등) 및지원대상자(지원공상군경·공무원 및 그 유족 등),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·소방공무원 등이 수수료 감면대상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강화 및 복지지원 향상을 위해 수수료 감면대상에 추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수수료의 감면대상 추가

- 제7조제1항9호

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

· 제7조제1항제10호
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3조의 2에 따라 국가로부터 의료 지원을 받는 자[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2011. 9. 15. 법률 제11041호) 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.] 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

4. 의견제출

가.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(찬·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)
-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기타 참고사항 등

나. 의견 제출처

- 주소 : 우52425,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(남해군청) 재무과
- 연락처 : 전화 055-860-3182, 팩스 860-3705, e-mail : jwc71@korea.kr

# 의견 제출서

1. 자치법규명		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		
2. 의견 제출자	성명(명칭)			전화번호
	주소			
자치법규안 내용		찬성 여부		의견
		찬성	반대	

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20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의견 제출인 성명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서명 또는 날인)

남 해 군 수 귀 하

남해군 조례 제 호

##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에 제9호와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

10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3조의 2에 따라 국가로부터 의료지원을 받는 자[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2011. 9. 15. 법률 제11041호) 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.] 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수수료의 감면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지적, 유선 및 도선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.</p> <p>1. ~ 8. (생 략)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제7조(수수료의 감면 등)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9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</p> <p>10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3조의 2에 따라 국가로부터 의료지원을 받는 자[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2011. 9. 15. 법률 제11041호) 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.]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</p>

남해군 공고 제2020-1176호

## 남해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

「남해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9월 22일

### 남 해 군 수

1. 자치법규명 : 「남해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」

2. 제정이유

- 대전-통영 간 고속도로 개설과 KTX 운행 등으로 인한 사천공항의 이용객 저조로 항공사 경영 애로
- 대한항공의 김포 노선의 감편 계획은 사실상 사천공항의 존폐 여부를 가릴 정도의 심각하고 중요한 사안으로
- 인근 지역의 공항 존재 여부가 우리 군의 장기적인 관광정책 수립, 인프라 등 수용태세 정비에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음.
- 우리 군의 교통 편의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천공항 활성화가 동반되어야 하므로 경상남도의 지원정책에 발맞춰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, 정의, 지원대상 등(제1조, 제2조, 제3조)
- 나. 지원내용, 지원신청 방법, 지원금의 교부 등(제4조, 제5조, 제6조)
- 다. 지원금의 정산, 지원금의 반환, 지원사업에 관한 감독 등(제7조, 제8조, 제9조)

4. 의견제출

가. 의견제출기간 : 2020년 10월 12일까지

-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1)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(찬·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)
- 2)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사항 등

나. 의견 제출처

1) 주 소 : ☎52425,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 
남해군청 건설교통과 교통지도팀

2) 연락처 : 팩스 055-860-3708, 이메일 youngs73@korea.kr

다. 의견제출 방법 : 팩스, 이메일, 직접 방문 등

5. 기 타

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교통지도팀(전화 055-860-3452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

남해군 조례 제 호

### 남해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항공사업법」 제65조에 따라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천공항을 활성화시켜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항공사업자”란 「항공사업법」에 따라 항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사천공항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는 정기·부정기 항공운송사업자(외국인 국제항공사업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를 말한다.

제3조(지원대상) 남해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항공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.

- 1. 국내 및 국제 항공노선 운항에 따른 항공사 결손금
- 2. 군수가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조(지원내용)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기준, 방법,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.

제5조(지원신청)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항공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재정지원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- 1.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
- 2. 운항기간 중 항공요금 승인 내역서
- 3. 운항기간 중 탑승 현황
- 4. 운항기간 중 운항기종 및 공급 좌석 수
- 5. 운항 사실 기록부
- 6.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인 경우)
- 7.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

제6조(지원금의 교부) 군수는 항공사업자로부터 제5조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이 있으면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재정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한다.

제7조(지원금의 정산)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항공사업자는 재정지원 대상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기간 운항실적에 따라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정산하여야 한다.

제8조(지원금의 반환) 군수는 지원 대상 항공사업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.

제9조(감독) 군수는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지원을 받은 항공사업자에게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,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10조(준용) 그 밖에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**부 칙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서식]

재정지원금 교부신청서

신 청 인	대 표 자		생년월일	(남,여)
	항공사명		사업자번호	
	소 재 지	( 〇 〇 〇 〇 〇 〇 )		
신청금액	금 원 (₩ )			
산출내역				
운항노선				
여객운임		운 항 기 종 및 좌석수		
운항기간		운 항 회 수		
탑승현황	공급좌석 수			
	탑 승 객 수	(남: 명, 여: 명)		
「남해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」 제5조에 따라 재 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.				
년 월 일				
신 청 인(대표자) 소 속 성 명 (인)				
남해군수 귀하				

거래은행	예 금 주	계좌번호
------	-------	------

- 첨부서류 1.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 
 2. 운항기간 중 항공요금 승인 내역서  
 3. 운항기간 중 탑승 현황  
 4. 운항기간 중 운항기종 및 공급 좌석수  
 5. 운항 사실 기록부  
 6.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)  
 7. 그 밖에 남해군수가 지정하는 서류

남해군 공고 제2020-1185호

##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남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9월 22일

### 남 해 군 수

#### 1. 자치법규명

남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

#### 2. 개정이유

「성별영향평가법」 용어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, 현행 조례의 기금 집행에 대한 내용을 보완·정비하여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.

#### 3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령 개정에 관한 사항

- “성별영향분석평가” → “성별영향평가”

(안 제2조제2호, 안 제6조제4호, 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)

나. 현행 조례의 조문 변경 및 삭제

- 제21조제2항의 내용 중 “이자수입금의” 를

“해당 연도의 이자수입금 전액 및 적립금의 100분의 3” 로 변경

- 제22조제3항 삭제(기금의 집행은 운용수익 범위에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.)

#### 4. 의견제출

가.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



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(찬·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)
-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기타 참고사항 등

나. 의견 제출처

- 주소 : 52419,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32(종합사회복지관) 주민복지과
- 연락처 : 전화 055-860-3847, 팩스 860-3882, e-mail : yymbak@korea.kr

# 의 견 제 출 서

1. 자 치 법 규 명		남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		
2. 의견 제출자	성명(명칭)			전 화 번 호
	주 소			
자치법규안 내용		찬 성 여 부		의 견
		찬성	반대	

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20년 월 일

의견 제출인 성명 : (서명 또는 날인)

남 해 군 수 귀 하

남해군 조례 제 호

###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성별영향분석평가”란 을 “성별영향평가”란 으로 한다.

제6조제4호 중 “성별영향분석평가”를 “성별영향평가”로 한다.

제10조의 제목 “(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)”을 “(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중 “성별영향분석평가”를 각각 “성별영향평가”로 한다.

제21조제2항 중 “이자수입금의”를 “해당 연도의 이자수입금 전액 및 적립금의 100분의 3”로 한다.

제22조제3항을 삭제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“<u>성별영향분석평가</u>”란 「양성평등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5조에 따라 군수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 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 평등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제6조(양성평등위원회) 양성평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남해군 양성평등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1. ~ 3. (생 략)</p> <p>4. <u>성별영향분석평가</u> 및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</p> <p>5. · 6. (생 략)</p> <p>제10조(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) ① 군수는 성 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해서 <u>성별영향분석평가</u>를 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 략)</p> <p>③ 군수는 <u>성별영향분석평가</u> 및 성인지 예산에 필요한 자문 및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제21조(기금의 용도) ① (생 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“<u>성별영향평가</u>”란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6조(양성평등위원회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성별영향평가</u> ----- -----</p> <p>5. ·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0조(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) ① - ----- ----- <u>성별영향평가</u>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<u>성별영향평가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1조(기금의 용도) ①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<p>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<u>이자수입금</u>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, <u>결산 잉여금</u>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<u>적립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22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<u>기금의 집행은 운용수익 범위에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.</u></p> <p>④·⑤ (생략)</p>	<p>② ----- <u>해당 연도의 이자수입금 전액 및 적립금의 100분의 3</u> ----- -----.</p> <p>제22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&lt;삭제&gt;</u></p> <p>④·⑤ (현행과 같음)</p>

남해군 공고 제2020-1187호

### 남해군계획시설[교통시설:도로,공간시설:녹지(에코촌 조성사업)] 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(의제)에 관한 공람·공고

남해군 고시 제2020-152호(2020.09.08.)로 최초 결정고시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군계획시설(교통시설:도로, 공간시설:녹지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『에코촌 조성사업』의 실시계획의 사항을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,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람·공고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자는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10월 6일

### 남 해 군 수

1. 사업의 위치

-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164-3번지 일원
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종류 : 남해군계획시설(교통시설:도로, 공간시설:녹지) 사업
- 명칭 : 에코촌 조성사업

3.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

- 면적 및 규모 : 교통시설(도로) 2,875㎡, 공간시설(녹지) 24,660㎡

구 분	합 계	교통시설(도로)		공간시설(녹지)	
		중로 3-A	소로 2-16	완충녹지	경관녹지
면 적(㎡)	27,535.0	1,662.0	1,213.0	7,492.0	17,168.0

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- 성명 : 남해군수(담당부서: 환경녹지과)
- 주소 :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

5. 사업기간

- 착수예정일 : 실시계획인가일
- 준공예정일 : 2022년 12월 31일
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세목조서: 붙임 참조

7. 관계도서 : 실음생략

(남해군청도시건축과(☎055-860-3413), 환경녹지과(☎055-860-3253)비치)

8. 열람기간 및 장소

- 기간 : 신문게재일 익일로부터 14일간
- 장소 :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및 환경녹지과

[붙임1]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·지번·지목·면적 및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의 성명·주소

1. 토지조서(총괄)

가. 지목별 편입토지조서

구 분	필 지 수	면 적(m <sup>2</sup> )	구 성 비(%)	비 고
<b>합 계</b>	<b>42</b>	<b>27,535</b>	<b>100.0</b>	
유	2	12,112	44.0	
잡	18	8,215	29.8	
답	18	5,133	18.6	
구	1	1,538	5.6	
제	1	290	1.1	
도	1	202	0.7	
수	1	45	0.2	

나. 소유자별 편입토지조서

구 분	필 지 수	면 적(m <sup>2</sup> )	구 성 비(%)	비 고
<b>합 계</b>	<b>42</b>	<b>27,535</b>	<b>100.0</b>	
공유지	39	39	97.5	
국유지	2	2	1.2	
사유지	1	1	1.3	

다. 편입토지조서 및 소유권 권리명세

■ 군계획시설별 편입토지조서

구 분	필 지 수	면 적(m <sup>2</sup> )	구 성 비(%)	비 고
<b>합 계</b>	-	<b>27,535</b>	<b>100.0</b>	
도 로	중로 3-A	9	1,662	6.0
	소로 2-106	8	1,213	4.4
완충녹지	32	7,492	27.2	
경관녹지	14	17,168	62.4	



■ 세부 편입토지조서

구 분		번호	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 면적(m <sup>2</sup> )	편입 면적(m <sup>2</sup> )	소유자	비 고	
교통 시설	도로	중로 3-1	1	이동면 무림리	1164-2	구	9,044	86	공유지	남해군
			2	이동면 무림리	1164-5	잡	1,284	42	공유지	남해군
			3	이동면 무림리	1164-7	답	489	1	공유지	남해군
			4	이동면 무림리	1164-8	잡	1,882	284	공유지	남해군
			5	이동면 무림리	1164-9	답	1,194	238	공유지	남해군
			6	이동면 무림리	1164-10	답	1,441	129	공유지	남해군
			7	이동면 무림리	1164-58	답	629	285	공유지	남해군
			8	이동면 무림리	1164-59	답	420	230	공유지	남해군
			9	이동면 무림리	1164-125	잡	928	367	공유지	남해군
	소 계						-	1,662	-	-
	소로 2-16	1	이동면 무림리	1164-2	구	9,044	579	공유지	남해군	
		2	이동면 무림리	1164-5	잡	1,284	57	공유지	남해군	
		3	이동면 무림리	1164-56	제	9,139	7	국유지	농림축산 식품부	
		4	이동면 무림리	1164-125	잡	928	115	공유지	남해군	
		5	이동면 무림리	1164-128	잡	55	47	공유지	남해군	
		6	이동면 무림리	1164-129	잡	229	42	공유지	남해군	
		7	이동면 무림리	1164-130	유	1,035	271	공유지	남해군	
		8	이동면 무림리	1164-131	잡	111	95	공유지	남해군	
	소 계						-	1,213	-	-
	교통시설(도로) 편입 토지 소계						-	2,875	-	-
공간 시설	완충 녹지	1	이동면 무림리	1164-2	구	9,044	302	공유지	남해군	
		2	이동면 무림리	1164-3	답	1,485	810	공유지	남해군	
		3	이동면 무림리	1164-4	답	666	148	공유지	남해군	
		4	이동면 무림리	1164-5	잡	1,284	211	공유지	남해군	
		5	이동면 무림리	1164-6	답	2,084	426	공유지	남해군	
		6	이동면 무림리	1164-7	답	489	400	공유지	남해군	
		7	이동면 무림리	1164-8	잡	1,882	37	공유지	남해군	
		8	이동면 무림리	1164-9	답	1,194	858	공유지	남해군	
		9	이동면 무림리	1164-10	답	1,441	32	공유지	남해군	
		10	이동면 무림리	1164-15	답	638	351	사유지	이0경	
		11	이동면 무림리	1164-17	답	159	159	공유지	경상남도	
		12	이동면 무림리	1164-18	답	577	150	공유지	남해군	
		13	이동면 무림리	1164-19	잡	3,738	1,017	공유지	남해군	
		14	이동면 무림리	1164-20	도	901	35	공유지	남해군	

구 분	번호	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 면적(m <sup>2</sup> )	편입 면적(m <sup>2</sup> )	소유자	비 고	
공간 시설	완충 녹지	15	이동면 무림리	1164-56	제	9,139	2	공유지	농림축산 식품부
		16	이동면 무림리	1164-58	답	629	7	공유지	남해군
		17	이동면 무림리	1164-62	답	229	210	공유지	경상남도
		18	이동면 무림리	1164-65	답	806	8	공유지	남해군
		19	이동면 무림리	1164-66	답	1,033	415	공유지	남해군
		20	이동면 무림리	1164-67	답	326	80	공유지	남해군
		21	이동면 무림리	1164-104	잡	4,596	25	공유지	남해군
		22	이동면 무림리	1164-108	잡	829	339	공유지	남해군
		23	이동면 무림리	1164-109	잡	1,662	349	공유지	남해군
		24	이동면 무림리	1164-125	잡	928	196	공유지	남해군
		25	이동면 무림리	1164-126	답	138	111	공유지	남해군
		26	이동면 무림리	1164-127	답	32	32	공유지	남해군
		27	이동면 무림리	1164-128	잡	55	8	공유지	남해군
		28	이동면 무림리	1164-129	잡	229	187	공유지	남해군
		29	이동면 무림리	1164-131	잡	111	16	공유지	남해군
		30	이동면 무림리	1164-132	수	113	45	국유지	환경부
	31	이동면 무림리	1164-133	잡	2,562	473	공유지	남해군	
	32	이동면 무림리	1164-139	답	375	53	공유지	경상남도	
	공간시설(완충녹지) 편입토지 소계					-	7,492	-	-
	경관 녹지	1	이동면 무림리	1164-2	구	9,044	571	공유지	남해군
		2	이동면 무림리	1164-20	도	901	167	공유지	남해군
		3	이동면 무림리	1164-23	유	11,632	11,632	공유지	남해군
		4	이동면 무림리	1164-56	제	9,139	281	국유지	농림축산 식품부
		5	이동면 무림리	1164-104	잡	4,596	299	공유지	남해군
		6	이동면 무림리	1164-109	잡	1,662	24	공유지	남해군
		7	이동면 무림리	1164-112	잡	990	351	공유지	남해군
		8	이동면 무림리	1164-113	잡	830	830	공유지	남해군
		9	이동면 무림리	1164-114	잡	826	826	공유지	남해군
		10	이동면 무림리	1164-115	잡	364	364	공유지	남해군
		11	이동면 무림리	1164-116	잡	622	622	공유지	남해군
		12	이동면 무림리	1164-117	잡	661	661	공유지	남해군
		13	이동면 무림리	1164-118	잡	331	331	공유지	남해군
14		이동면 무림리	1164-130	유	1,035	209	공유지	남해군	
공간시설(경관녹지) 편입토지 소계					-	17,168	-	-	
합 계					-	27,535	-	-	

# 남 해 군 공 보

(26) 제 674 호

2020년 10월 6일

## 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·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

번 호	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(m <sup>2</sup> )		소유자		관계인	
				지적 면적	편입 면적	주소	성명	주소	성명
1	이동면 무림리	1164-2	구	9,044	1,538		남해군		
2	이동면 무림리	1164-3	답	1,485	810		남해군		
3	이동면 무림리	1164-4	답	666	148		남해군		
4	이동면 무림리	1164-5	답	1,284	310		남해군		
5	이동면 무림리	1164-6	답	2,084	426		남해군		
6	이동면 무림리	1164-7	답	489	401		남해군		
7	이동면 무림리	1164-8	잡	1,882	321		남해군		
8	이동면 무림리	1164-9	답	1,194	1,096		남해군		
9	이동면 무림리	1164-10	답	1,441	161		남해군		
10	이동면 무림리	1164-15	답	638	351	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467길	이0경		
11	이동면 무림리	1164-17	답	159	159		경상남도		
12	이동면 무림리	1164-18	답	577	150		남해군		
13	이동면 무림리	1164-19	잡	3,738	1,017		남해군		
14	이동면 무림리	1164-20	도	901	202		남해군		
15	이동면 무림리	1164-23	유	11,632	11,632		남해군		
16	이동면 무림리	1164-56	제	9,139	290		국(농림축산 식품부)		
17	이동면 무림리	1164-58	답	629	292		남해군		
18	이동면 무림리	1164-59	답	420	230		남해군		
19	이동면 무림리	1164-62	답	229	210		경상남도		
20	이동면 무림리	1164-65	답	806	8		남해군		
21	이동면 무림리	1164-66	답	1,033	415		남해군		
22	이동면 무림리	1164-67	답	326	80		남해군		
23	이동면 무림리	1164-104	잡	4,596	324		남해군		
24	이동면 무림리	1164-108	잡	829	339		남해군		
25	이동면 무림리	1164-109	잡	1,662	373		남해군		
26	이동면 무림리	1164-112	잡	990	351		남해군		
27	이동면 무림리	1164-113	잡	830	830		남해군		
28	이동면 무림리	1164-114	잡	826	826		남해군		
29	이동면 무림리	1164-115	잡	364	364		남해군		
30	이동면 무림리	1164-116	잡	622	622		남해군		
31	이동면 무림리	1164-117	잡	661	661		남해군		
32	이동면 무림리	1164-118	잡	331	331		남해군		
33	이동면 무림리	1164-125	잡	928	678		남해군		
34	이동면 무림리	1164-126	답	138	111		남해군		

번호	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(m <sup>2</sup> )		소유자		관계인	
				지적 면적	편입 면적	주소	성명	주소	성명
35	이동면 무림리	1164-127	답	32	32		남해군		
36	이동면 무림리	1164-128	잡	55	55		남해군		
37	이동면 무림리	1164-129	잡	229	229		남해군		
38	이동면 무림리	1164-130	유	1,035	480		남해군		
39	이동면 무림리	1164-131	잡	111	111		남해군		
40	이동면 무림리	1164-132	수	113	45		국 (환경부)		
41	이동면 무림리	1164-133	잡	2,562	473		남해군		
42	이동면 무림리	1164-139	잡	375	53		경상남도		
<b>합 계</b>				<b>67,085</b>	<b>27,535</b>				

남해군 공고 제2020-1188호

## 남해학숙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「남해학숙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9월 23일

### 남 해 군 수

1. 자치법규명 : 남해학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일부개정 이유

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남해학숙 입사자격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 출신 수도권 대학생들의 생활비 부담을 경감하고 면학편의를 제공코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(제5조)

- 입사생의 자격을 수도권소재 4년제 대학의 입학생 및 재학생에서 수도권 대학으로 확대함.

3. 의견제출

가.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남해군수(참조 청년혁신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(찬·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)
-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기타 참고사항 등

나. 의견 제출처

- 주소 : 52425,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30번길 9 남해군청 청년혁신과과 교육청소년팀
- 연락처 : 전화055-860-8643, 팩스055-860-3750, e-mail : jjona815@korea.kr

# 의 견 제 출 서

1. 자 치 법 규 명				
2. 의견 제출자	성명(명칭)			전화번호
	주 소			
자치법규안 내용	찬 성 여 부		의 견	
	찬성	반대		

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20년 월 일

의견 제출인 성 명 : (서명 또는 날인)

남 해 군 수 귀 하

남해군 조례 제 호

## 남해학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해학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1호 중 “4년제 이상 대학교” 를 “대학” 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대학교” 를 “대학” 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대학원생 및 2년제 이상 대학생” 을 “대학원생” 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) ① 학숙에 입사하려는 대학생은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, 선발공고일 기준으로 그 보호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남해군에 주민 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.</p> <p>1. 수도권 소재(서울특별시·인천광역시 ·경기도 지역을 말한다. 이하 같다)4년 제 이상 대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</p> <p>2. 지방 소재 대학 재학생 중 수도권 소 재 <u>대학교</u>에 1년 이상 교환학생 또는 학 업과 관련하여 연수나 실습을 목적으로 1년 이상 수업을 받는 학생</p> <p>3. 다만, 입사생이 정원에 미달할 경우 수도권 소재 <u>대학원생</u> 및 2년제 이상 대 <u>학생</u>을 선발 가능</p> <p>② · ③ (생 략)</p>	<p>제5조(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----- -----<u>대학</u> ----- 2. ----- -- <u>대학</u> ----- ----- 3. ----- ----- <u>대학원생</u> ----- -----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

남해군 공고 제2020-1189호

### 공인 등록 공고

남해군 공인조례 제6조(공인의 등록)의 규정에 따라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하고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20년 9월 24일

### 남 해 군 수

- 1. 사용 개시일 : 2020. 9. 24.
- 2. 사유
  - 등록 : 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 
업무용 전산시스템에 확인서 발급 등에 사용  
(특별조치법2020시스템: 2023년 2월 4일까지 사용)
- 3. 등록 공인명·인영
  - 등록

공인명	규격	구분	인영	사용부서
남해군수인 (전자이미지)	2.4cm 정사각형	전자이미지 시스템등록		민원봉사과

끝.